

6 (第117回-運營第1次)

第117回 臨時會 議事日程案

會 期 : 2000. 2. 9(水) ~ 2. 21(月) 13日間
議事日程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2. 9(水) 14 : 00	* 開 會 式 1. 第117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議運營에 관한條例案 4. 서울特別市會議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決算檢查委員選任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2000年度業務計劃報告의 件 -서울特別市 -서울特別市教育廳 *本會議 休會決議 : 2. 10~2. 20(11일간)	
2. 10(木) ~ 2. 20(日)	○委員會 活動	本會議 休 會
2. 21(月) 14 : 00	1. 案件處理	

*본 일정은 운영위원회와 각 대표의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p> <p>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p> <p>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9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p> <p>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p>
--	---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단,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여비정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와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별표3 국외항공임정액표, 별표4 국외여비정액표, 별표5 국내이전비지급표, 별표6 국외이전비정액표, 별표7 국외준비금지금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지 급 액	월 700,000원	월 200,000원

<별표2> 회기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회 기 수 당	일 80,000원

별표3의 비교 5호 중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로 한다.

별표4의 비교 1호 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별표2)의”를 “(별표4)의”로 하며, 비교 2호 중 “국외여비규정 제22조를”를 “공무원여비규정 제23조를”로 하고, 비교 3호 중 “국외여비규정의”를 “공무원여비규정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3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의회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2인 이상”을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바목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를 “농수산물공사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공인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